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34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년 4월 2일
- 회 부 일 : 2021년 4월 6일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 2건임.

- 취득 2건은 증축 및 리모델링 1건, 신축 1건임.

나. 취득 2건

○ 증축 및 리모델링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신림선 경전철과 보라매병원 간 이용자들의 보행안전과 편의향상을 위하여 지하연결통로 및 로비 설치 등을 위한 증축(526.00㎡) 및 리모델링(681.00㎡) 추진(1,207.00㎡)

○ 신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수소경제 기반 구축 및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자 서소문청사 내 기존 CNG충전소를 철거하고 수소충전소를 신축(195.48 m^2)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

○ 취득 2건

- 증축 및 리모델링 1건 : 건물 1,207.00 m^2
- 신축 1건 : 건물 195.48 m^2

4. 검토의견

가. 취득 및 처분 총괄 내역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2개 사업에 총 2건으로 취득 2건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취득 2건은 증축 및 리모델링 1건, 신축 1건 임.

〈취득 및 처분 내역〉

연번	사업명	구분	소재지	소요예산 (백만원)	주요내용
1	보라매병원 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시민건강국)	취득 (증축 및 리모델링)	동작구 신대방동 425번지	3,852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신림선 경전철과 보라매병원 간 이용자들의 보행안전과 편의향상 등을 위하여 지하층 연결통로 설치 및 증축 리모델링 등 추진 - 용도 : 종합의료시설 - 사업기간 : '21.2 [사업계획 수립] ~ '23.6 [건물준공] - 사업규모 : 1,207.00㎡ (증축 : 526.00㎡/리모델링 : 681.00㎡) - 기준가격 : <건물> 3,852,000천원 [증축 및 리모델링비] ※ 가편성 예산 : 2020년 100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2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기후환경본부)	취득 (신축)	중구 서소문동37	3,700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수소차의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급용 수소충전소 설치 - 용도 : 공공용 수소충전시설 - 사업기간 : '20.12 [계획 수립] ~ '21.12 [사업 준공] - 사업규모 : <건물신축> 195.48㎡ - 기준가격 : <건물신축> 3,700,000천원 ※ 가편성 예산 : 2021년 3,700백만원 (국비 1,500백만원 사비 2,200백만원)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나. 취득 및 처분 재산별 내용검토

① 보라매병원 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취득목록 1번)

- 본 건은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425번지)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희망관(지하1층)과 신림선 경전철 역(106정거장)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수평증축 및 리모델링(526㎡)을 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8억5천2백만원(병원 37억5천2백, 시비 1억, 일반회계) 규모임.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25번지
- 사업기간 : 2021. 2. [계획 수립] ~ 2023. 6. [건물 준공]
- 소요예산 : 3,852백만원 <병원 3,752백만원 / 시비 100백만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백만원)	100	1,400	1,500	852

- 사업내용 : 신림선 경전철과 보라매병원 간 연결통로 설치 및 리모델링
- 사업규모 : 526.0㎡ ※ 기존 보라매병원 지하층에 수평증축
 - 동관(지하2층/지상6층, 8,521.41㎡), 신관(지하3층/지상9층, 39,949.35㎡) : 불변
 - 본관 : 1,207.00㎡ 지하증축(526.00㎡) 및 리모델링(681.00㎡)
- 기준가격 : 3,852,000천원 <증축 및 리모델링비>

구분	항목	소재지	면적(㎡)	㎡당 공시지가(천원)	기준가격(천원)
취득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동작구 신대방동 25번지	1,207.00	-	3,852,000

- 계약방법 : <건물증축 및 리모델링> 공개경쟁입찰
- 추진근거
 - 「보라매병원 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및 리모델링 계획」(보건의료정책과-5620, '21.2.3.)
- 관련계획
 - 사 업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사업규모 : 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셋강역~서울대앞), 차량기지 1개소

※ 기 편성예산 : '20년 100백만원(민간위탁사업비, 100백만원 집행완료)

- 신림선 경전철은 2015년 9월 착공, 2022년 개통 예정으로 영등포구 여의도 셋강역을 출발해 대방역, 보라매역, 신림역 등 서울 서남권을 잇는 총 연장 7.8km의 경전철로써 지하철과 환승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 혼잡함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신림선 경전철 사업현황

-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 행 자 : 남서울 경전철주식회사
- 사업규모 : 셋강역~서울대학교역 연결하는 11개소
- 개통예정 : 2022년 6월



※ 출처 :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자료제공

- 동 사업은 2019년 12월 보라매병원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신림선 경전철 지하 연결공간 개발에 대한 안건이 상정·의결되어, 2020년 2월 경전철 사업시행자와 보라매병원 간 협의를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수평증축 및 연결통로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2021년 6월 건축설계 구조검토를 앞두고 있음.

[보라매병원 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추진 경위]

추진현황

- '19.12.27 : 보라매병원 정기운영위원회 의결
 - 신림선 경전철 지하연결공간 개발에 대하여 원안 의결
- '20.02.11 : 관련주체간 협의(사업시행자, 병원 등)
 - (경전철 사업시행자측 의견) 지하연결통로 예정구역에 장애물 등이 구축되지 않도록 하며, 106정거장 벽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영가능
- '21.02.03 : 보라매병원 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및 리모델링 계획 방침
- '21.03.10 : 공유재산심의회 완료

향후계획

- '21. 6. : 건축설계시 구조검토 및 건축허가
- '21. 7. : 공사발주 및 착공
- '23. 6. : 공사준공

- 시민건강국은 106정거장이 보라매병원 간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보라매병원 이용환자의 50%정도가 6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보행의 안전성이 필요하고, 기존 지상부 이용 시 구급차 등 차량이동이 많아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점에서 보라매병원 경전철 연결통로가 준공될 경우 병원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지하통로 이용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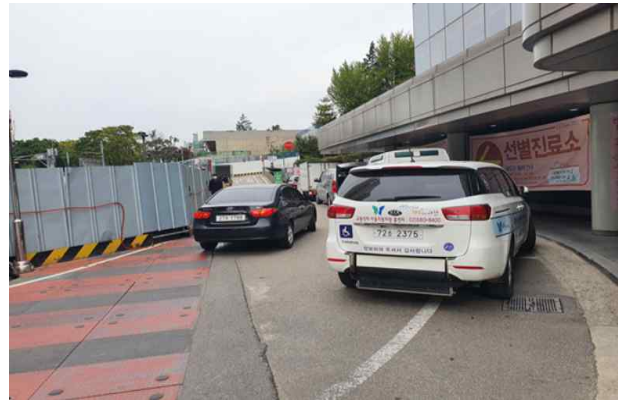
[보라매병원 현장사진]

현장사진1

현장사진2



중축부
지하연결통로
경전철
에스컬레이터
경전철
엘리베이터



경전철 및 병원간 연결계획

경전철 및 병원간 차로 현황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기초(천원)	금 액(천원)
총 계	①+②+③+④	3,852,000
	소 계(①)	3,302,000
공사비	1,233,586 ※ 서울시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준용(이하 동일)	1,233,586
	건축	366,992
	설비	760,968
	전기	169,618
	통신	616,793
	토목	154,044
	기타	
	소 계(②)	550,000
용역비	300,000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준용(감리용역 동일적용)	300,000
	감리 용역	250,000
	소 계(③)	-
보상비	토지매입비	
	분할납입이자	
	소 계(④)	-
기타	시설부대비	
	제세공과금 등	

- 다만, 신림선 경전철 시행업체와의 협의, 수평증축 가능여부, 건축설계 구조검토, 관리계획 승인 전 예산편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의 연결통로 설치에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해당하므로 기존 병원의 수익성과는 변동이 없겠으나 접근성 향상에 따라 병원 이용객 증가로 인해 신림선 경전철 이용 수익창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전철 사업시행 측과 협의하여 재정분담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둘째, 동 사업의 건립대상부지는 보라매병원과 경전철 정거장을 연결하여 지하 1층에 수평증축 및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바, 경전철 정거장 및 보라매병원(1955년 6월 18일 설립)의 구조적 안전 평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축설계 구조검토가 2021년 6월 실시예정인 병원 리모델링 시 수평증축의 허용범위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공사방식 등 종합적인 안전진단 평가의 선행 필요성과,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세밀한 증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수평 증축 및 연결통로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4조에 따라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시민건강국은 협약에 따라 당연히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입장임.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 조건부 적정

- ▶ 사업명 : 보라매병원 경전철 연결통로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
- ▶ 심사내용 : 보라매병원 경전철 연결통로 및 내부 지하층 증축사항
- ▶ 심사결과 : 수평 증축 및 연결통로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주체 명확히 하여 추진
- ▶ 처리계획 : 市-병원간의 협약서에 따라 병원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市에게 귀속되므로 소유권은 당연 서울시 소유가 됨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

제4 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서울대병원"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병원설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서울대병원"은 이 협약체결 이후에 수탁재산을 개.보수하거나 증축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서울대병원"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서울대병원"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서울대병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병원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에게 귀속되며, 이를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서울대병원"에게 병원운영을 위하여 기증한 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서울대병원"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대여·교환 및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다만, 환자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⑦ "서울대병원"은 "시"의 공공의료확충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를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 넷째, 시민건강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기 전인 2020년도 예산에서 설계용역비(1억원)를 편성하여 집행완료 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¹⁾」를 위반한 것인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섯째, 지하 1층 증축 부분은 의료정보센터 등 기존 실방은 지상 1층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로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기존 실방 이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세부시설 운영계획

- 지하층 증축 : 연결통로 설치 및 증축(526 m^2)
 - 본관 지하1층에 신림선 경전철 정거장과 연결된 통로 설치(122 m^2)
 - 지하 1층 증축부에 의료정보센터 등 기존 실방 이전(404 m^2)
- 내부 리모델링 : 로비 설치 등(681 m^2)
 - 지하1층 : 기존 실방 부분에 로비 및 편의시설 등 설치(467 m^2)

철거 예정 실방(지하1층)	면 적(m^2)
계	467.0
의료정보센터	185.7
감염관리상담실	33.7
기독교원목실	21.4
천주교원목실	22.3
불교원목실	21.3
직원휴게실	26.6
건강관리실	40.5
화 장 실	6.5
복도 등 공용부	109.0

- 지상1층 : 지하층과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214 m^2)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고은
------	-----	-------	-----

②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취득목록 2번)

- 본 건은 수소차 활성화 및 충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중구(서소문동37) 소재 서소문청사 내 CNG 충전소와 트랙카페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수소 충전소를 신축(195.48㎡)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7억원(국비15억/시비22억) 규모임.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37(서소문청사)
- 사업기간 : 2020.12. [계획 수립] ~ 2021.12 [사업 준공]
- 소요예산 : 3,700백만원 <국비 1,500 / 시비 2,200>
- 사업내용 : CNG충전소 철거 후 서울 중심부, 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 사업규모
 - 건물 : 195.48㎡(위험물시설, 수소충전시설)
 - 충전설비 : 수소충전설비 일체(압축기, 고압저장용기, 냉각기, 충전기 등)
- 충전용량 : 200Kg/일 (충전 40대/일) ※소형트레일러(용량 100kg) 2대 활용
- 기준가격 : <건물신축> 3,700,000천원
- 계약방법 : <토지사용> 부처협의 / <건물신축 및 공작물설치> 공개경쟁입찰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계획]

□ 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 : 2022년 4,354대 (2020년 1,854대)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당초(누계) ()는 당해년도	83대	233대 (150대)	700대 (467대)	1,200대 (500대)	3,000대 (1,800대)
변경(누계) ()는 당해년도	84대	591대 (507대)	1,854대 (1,263대)	3,354대 (1,500대)	4,354대 (1,000대)

□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누계) : 2022년 15개소(2020년 10개소)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당초(누계) ()는 당해년도	2개소	4개소 (2개소)	7개소 (3개소)	9개소 (2개소)	11개소 (2개소)
변경(누계) ()는 당해년도	2개소	4개소 (2개소)	10개소 (6개소)	12개소 (2개소)	15개소 (3개소)

※ 출처 : 서울시 전자문서 결재문서 본문(기후대기과-16863호, 2019.10.25.)

- 동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서울시 내 수소충전소 15개소 구축 및 수소차 4,000여대 보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 약 21%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임.
- 현재 우리나라 전국 수소차 보급대수는 4,200여대로 세계 1위이고,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수소차 보급대수는 총 1,620대(승용차 1,616대, 버스4대)로써 해마다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는 4개소(국회, 강동상일, 상암, 양재)만 운영 중인바, 수소생산이나 충전소 같은 인프라 체계는 미흡한 실정으로 보임.

[서울시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21.3.31. 기준)

구 분		운영주체	운영시기	충전능력	비고
민 간	국회 수소충전소	현대자동차 (하이넷 위탁운영)	’19.9월	80대/일	저장식
	강동상일 수소충전소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위탁운영)	’20.5월	70대/일	저장식
서울시	상암 수소충전소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대행운영)	’20.10월	40대/일	생산식
	양재 수소충전소		’21.3월	70대/일	저장식

※ 출처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자료제공

- 또한, 수소차의 충전시간은 평균 10분 정도로 시간당 5대 정도 충전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충전소가 하루 충전능력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있고 수요가 몰리는 주말에는 연료 부족현상을 빚고 있어 수소충전소의 용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음.
- 기후환경본부는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가 준공을 통해 약 320대의 수소차 충전인프라가 구축되어 수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1.1~3월간 수소충전소별 평균 충전대수 및 충전량]

구 분	합계	국회수소충전소	강동수소충전소	상암수소충전소	양재수소충전소 (1~2월 휴장)
설계 충전대수(대)	270	80 (5대/시간×16시간)	70 (5대/시간×15시간)	40 (3대/시간×12시간 +여유4대)	70 (5대/시간×14시간)
평균 충전대수(대)	191	84	59.3	33.9	27.7
평균 일충전량(kg)	785.1	347.8	262.8	120.9	107.4

※ 출처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자료제공

- 대상지는 서소문청사 내 현 CNG충전소와 트랙카페 부지로, 서울도심 내에 구축하여 수소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안전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홍보하고,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첫 발판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에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설치 공정도 및 배치도 》



-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인허가 절차, 대형 탱크로리 운행 관련 교통고시 개정 여부, CNG 충전소 철거 후 이전대책 수립 여부, 안전기준 및 수소품질 기준 마련, 수소충전소의 낮은 수익성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청사 주변 문화재(덕수궁) 및 보호시설 관련 규제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

1. 제1종보호시설

- 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청소년수련시설·경로당·시장·공중목욕탕·호텔·여관·극장·교회 및 공회당(公會堂)
-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 다. 예식장·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보호시설

- 가. 주택
-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 특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제2조제1항제23호 관련)」 상 제1종 보호시설인 시립미술관(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과 이격거리 17m를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으로 규제특례를 받았는 바,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Code²⁾ 2.1.1.호)에서 관행적으로 '동일 사업부지'안에 보호시설과는 이격거리 규정을 미적용하고 있지만, 규정적용을 위해서는 위탁운영이 아닌 부지 소유주가 직접운영을 해야 함.

○ '21.03.11. :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례 선정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례 결과

- ▶ 사업명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 ▶ 사업내용 : 서울 도심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 KGS Code : KGS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이다.

▶ 조건사항

- 업계, 학계, 정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사(→완료)
- 방호벽 및 안전장치 설치 등 이격거리 대체 안전기준 마련·이행
- 실증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지자체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및 고압가스제조 허가 실시

- 또한, 시립미술관의 경우는 규제특례를 받았으나 시립미술관 옆 시청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원아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에 따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상의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확인서-8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1년 3월 11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서울특별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4-83-00469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대표자 서 정 협		
확인내용	명칭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주요내용	서울 도심내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구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일대(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기간	2년	
규모	저장식 수소충전소 1개소		
조건	<p>① 방호벽 및 안전장치 설치 등 이격거리 대체 안전기준 마련·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서울시와 가스안전공사가 실증사업 진행 前, 해외(일본·미국·유럽 등) 도심 수소충전소의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 * (방호벽) 설치위치·높이·구조·두께·재질 기준 등 		

** (안전장치) 긴급차단장치 2중설치, 압력방출설비, 가스온도상승방지 장치 등

② 실증기준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및 지자체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 및 고압가스 허가 실시

③ 업계·학계·정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 (실증 前) 실증기준(안) 및 이행점검 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실증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단계별 검증내용 및 결과를 산업부로 승인요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 둘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별표1」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서울시청 반경 10km 내의 도로에서는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의 운행을 24시간 내내 제한하고 있는 바, 수소를 실어 나르는 수소튜브트레일러⁴⁾의 운행에 대한 고시 개정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소튜브트레일러 : 수소 튜브트레일러는 특장차 위에 카트리지가 형식의 수소가스 저장용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수소 충전소에 도착하면 바퀴가 달린 카트리지만 내려놓고 차량은 돌아가게 된다. 이어서 카트리가 충전소 압축기에 수소를 공급하면 고압용기를 거쳐 디스펜서를 통해 수소전기차에 충전하게 된다. CNG충전소와 다른 점은 충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의 온도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설비가 추가된 점이 다르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별표1>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

1. 제한내용

차 종	제 한 시 간	제 한 구 역	비 고
3.6톤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도 심 권	토·일·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도 심 권	
	07:00~09:00	올림픽대로 구간 (강일I.C-행주대교)	토·일·공휴일 제외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24시간	도 심 권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09:00까지만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한다.

※ 비 고

도심권 : **시청기점 반경 10Km 내의 다음 도로**로서, 강변북로(양화대교 북단부터 성수 JC까지) - 독섬로(용비교 서단) - 고산자로(응봉교 남단~왕십리역 고산자교~경동시장~홍파초교~고려대 앞) - 종암로(고려대 앞 교차로~종암사거리) - 정릉로(종암사거리~길음교~국민대입구~북악터널) - 평창문화로(북악터널~신영동삼거리) - 세검정로(신영동삼거리~세검정삼거리~홍은사거리) - 연희로(홍은사거리~서대문구청 앞~연희C~동교동삼거리) - 양화로(동교동삼거리~서교동사거리~합정역~양화대교 북단)를 잇는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를 말한다.

2. 예외규정

가. 긴급자동차

나.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통행허가증 발급 받은 차량도 07:00~09:00, 18:00~21:00 제한)

※ 이와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하였던 바, 경찰청 측 검토 결과 수소 운반 차량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 및 기술적 안전성 등을 통과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셋째, 공유재산심의회(2021.3.10.) 심의결과,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진입동선을 고려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적정 심의를 받은 바, 원활한 교통순환 및 신속한 충전환경 계획 마련과 공간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증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경찰청 협조요청사항 검토 결과]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신 서울특별시시장(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 도심권 내 수소충전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사항 검토 결과
회신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협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수소 충전소 설치 후 수소 충전 차량 도심권 통행 허가 가능 여부(사전협의)

※ '21. 7월 완공 예정, 하루 1~2대 통행 예정

○ 검토 결과

：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수소 운반 차량에 대한 법적 규제 사항, 기술적 안전성 등을
통과한다면 요청하신 수소 충전 차량의 통행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1.3.10. 규제 샌드 박스 통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력 안전성 검토 진행 중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청장인



청장우사보 김연호 경찰 노광식 교통안전과장 문영 03/18
전준홍

참조자

시행 교통안전과-2927 (2021. 3. 18.) 접수 환경정책과-4360 (2021. 3. 18.)

우 03189 서울특별시 용로구 사직로8길 31, 교통안전과 교통 / http://www.emps.go.kr

안전계 (내자용)

전화 02-700-5046 / 전승 02-700-4714 / kih05078@police.go.kr / 비공개(7)

- 넷째, 기존 CNG 충전소를 사용했던 마을버스와 청소차 등 하루 60대 차량의 충전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전부지 확보 및 대안이 필요하며, 예약제로 수소차 충전시스템이 운영된다고는 하나 사업 대상지에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청 직원 및 시민들의 진출입이 잦은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운영계획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소문청사 내 CNG충전소 이용 현황]

□ 운영현황

- 운영시간 : 18:00~익일 08:00 (야간충전)
- 충전차량 : 마을버스 1일 50대(정기), 청소차 등 1일 10대 충전(주 2~3회)

□ 서소문청사 CNG충전소 이용 마을버스 현황 (' 21.2월)

- 금양운수 등 마을버스 9개 업체(12개노선), 62대 차량이 이용중

계 (노선번호)	금양운수 (용산04)	남산운수 (용산03)	노들운수 (동작03, 12)	삼하운수 (서대문11, 13)	서북운수 (서대문05, 06)	대산교통 (종로02)	종로운수 (종로03)	약수교통 (성북20)	충정운수 (서대문02)
62	7	2	13	13	13	4	3	1	6

□ 충전량 및 이용 대수(21.1~3월)

계		'21. 1월		'21. 2월		'21. 3월	
대수	충전량	충전대수	충전량(m^3)	충전대수	충전량(m^3)	충전대수	충전량(m^3)
5,389	452,325	1,837	157,529	1,641	134,478	1,911	160,318

※ 출처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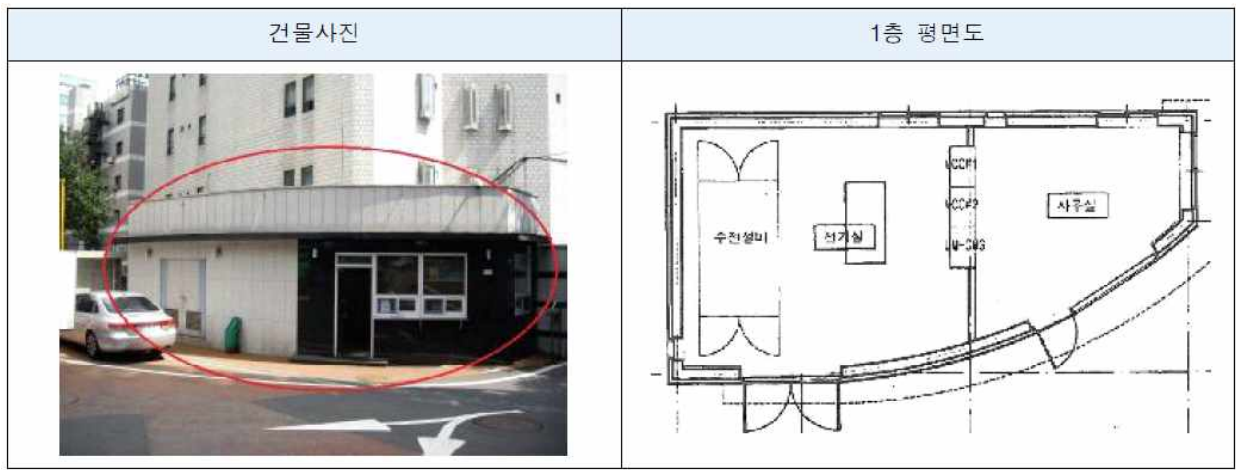
- 다섯째, CNG 충전소(79.30 m^2)와 맞은 편 관리시설(44.16 m^2)은 일반 기업에게 기부채납(3억2천만원) 받은 후 무상사용 중이고, 토지는 유상사용허가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토지사용 허가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광신기계공업(주)이 사용 중으로 2022년 5월 1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의 처리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청별관 충전소 관리시설 현황]

□ 건물호별 내역

층	호	형태 계약	건물 면적 (㎡)	용도	계약일 (부과일)	계약기간 (점유기간)	대부료 (천원) (변상금)	사용자	상근 직원 수
1층	1	무상 수익	30.00	기계실 (전기실)	2008.01.11	2007.05.02.~ 2022.05.01		광신기계 공업(주)	
1층	2	무상 수익	14.00	사무실 (사무실)	2008.01.11	2007.05.02.~2 022.05.01		광신기계 공업(주)	2
계	0호		44.00				0		2

□ 건물사진 및 1층 평면도



- 또한, 현 트랙카페는 2009년 3억2천만원을 들여 직원들의 영어학습을 위해 '파인트리'라는 명칭의 쉼터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참여율 저조로 인해 2012년 직원 자유공간으로 변경하여 10여년 간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며 서울시 직원의 복지시설과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공간 멸실의 예산낭비요소 등 타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섯째, 동 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으나, 이는 구매에 대한 보조 및 충전시설의 보급 지원에 대한 근거 법률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는 미비되어 있는 바, 관련 지침 및 수소의 품질기준 등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 1. 5.>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는바, 수소 관련 사업의 안전 및 기술관리의 규제와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시설의 입지규제 등 추가적인 입법적 체계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곱째, 수소충전소 운영은 서울에너지 공사 대행을 통해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연간 사업수지 전망에서 1억원 규모의 수익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 바, 추가적 재정지출 여지는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수소충전소 운영(공사 대행)]

관리운영계획(안)

- 조직 및 운영인력 : 총 4명 (안전관리자 2명 포함)
- 운영방법 : 서울에너지공사 대행 또는 민간사업자 위탁 운영
- 시설운영 계획
 - 수소충전소 구축 이후부터 상업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사전 준비
 - 수소 충전설비 운영은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을 통해 우선 운영

항 목	공사 운영
운영시간	08:00~20:00(평일) / 08:00~18:00(주말)
수소충전요금	8,800원/kg
필수인원 (안전관리자)	가스기사 1명, 일반시설관리자 1명
운영인원	설비운전·판매 2명
관련면허	고압가스 저장, 충전 면허

사업수지 전망

- 예상수입 : 연간 691,360천원

산 출 근 거	금 액 (단위:천원)	비 고
· 판매단가 : 8,800원/kg * 200kg/일 * 336일 = 591,360천원 ※ 충전설비 고장, 정기점검 등 고려 월 28일 운영 가정	591,360	
· 환경부 적자 보존 : 70,000천원~160,000천원	100,000	

- 예상지출 : 연간 803,200천원

산 출 근 거	금 액 (단위:천원)	비 고
· 수소수입원가 : 6,000원/kg * 200kg/일 * 336일 = 403,200천원	803,200	
· 인건비 : 300,000천원		
· 유지관리비 등 : 100,000천원		

※ 출처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자료제공

- 한편, 기후환경본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기 전에 2020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15억원(2020년 2월 간주처리)과 변경사용(22억원, 2020년 12월) 예산 등 총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12월 24일 대행협약 사업비를 지출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⁵⁾ 위반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위배와 함께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훼손한 본 관리계획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예산 변경계획

- 변경개요 : 수소차 보급 예산 중 불용예정액을 변경하여 일반 수소 충전소 구축 비용을 마련, 수소차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 변경예산 : 2,200,000천원
 - 변경예산과 '20년도 국고보조금 15억과 매칭하여 총 37억원의 수소충전소 구축비용 확보 (설치비 30억원, 철거비 등 약 7억원)

(단위 : 천원)

정책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내역		변경 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소 계					(×38,550,000) 57,587,500	2,200,000	△2,200,000	(×38,550,000) 59,087,500
기후 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수소차보급및 충전소 구축	민간자본 이전	402-02	(×27,450,000) 42,587,500	-	△2,200,000	(×27,450,000) 40,387,5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02	(×11,100,000) 15,000,000	2,200,000	-	(×11,100,000) 18,700,000

- 예산변경 사유 :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 '21년도 신형 수소차 도입 예정에 따라 '19년형 수소차에 대한 수요 감소 및 '20년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15억원에 대한 시비 마련 필요

【 예산담당관 의견 : 조건부 동의 】

-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국가의 주요 추진업무 중 하나이므로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예산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함.
- 다만, 예산변경 및 지출 이후 공유재산심의 등 절차 이행이 필요
 - 기후환경본부 : 서울에너지공사와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대행협약 체결('21.12.24.) 및 대행사업비(37억원) 지출 후 '21년도에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중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고은
------	-----	-------	-----

참고 1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기초(천원)	금 액(천원)
총 계		①+②+③	3,700,000
공사비		소 계(①)	3,420,000
	건 축	기초 및 구조물(195.48㎡)	450,000
	설 비	수소충전설비 일체 - 수소압축배키지 : 550,000 - 우선순위제어반 : 230,000 - 압력저장용기 : 350,000 - 수소충전기 : 300,000 - 칠러 및 냉동기 : 350,000 - 모니터링 시스템 : 70,000 - 계측장비 : 90,000 - KGS 검사 : 40,000 - 시운전 비용 : 150,000 - 예비부품 등 : 70,000	2,220,000
	전기 및 통신	- 수전공사 : 220,000 - 통신공사 : 130,000	350,000
	조경 작업	- 20,000	20,000
	철거 및 토목	기초 파일 및 아스콘 포장	180,000
	기타 기계공사	- 설치 및 배관공사 : 100,000 - 설비 및 방폭설비공사 : 100,000	200,000
		소 계(②)	130,000
	용역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 - 지질조사, 기술검토서 작성, 기본설계, 인허가, 감리용역 등 1식 : 130,000	130,000
기타비용		소 계(③)	150,000
	대행수수료	수소충전소 구축 대행사업 수수료 150,000	150,000
	기존 운영권	협의	0